

# 공정위, 비리직원 “숨방망이” 징계

## 담당팀장 직위해제에 본부장은 주의조치 ... 검찰 고발은 안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27일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과정에서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한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금품수수에 반대한 직원 1명은 경징계하고 스스로 금품을 돌려준 직원과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팀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담당본부장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공정위는 금품수수 사건 조사결과 현장의 직원들이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임을 알고 받았으며, 조사기간 현대자동차측과 3-4차례에 걸쳐 식사도 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중징계의 종류로는 파면과 해임, 정직(1-3개월)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제2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현대자동차에 대한 조사 담당자를 전원 교체기로 했으며, 팀장을 포함한 조사팀을 조속히 재구성한 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나 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15일 이상의 장기 직권조사시 1주일에 1일은 모든 조사담당자가 사무실로 출근해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재점검기로 했으며, 감사담당관실도 조사과정에 대한 중간 감찰을 실시기로 했다.

또 내부고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직원들의 행동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고 체계적인 교육도 강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직원에게 불법행동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경감사유가 있어도 일정기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 대상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에 대해 자체조사로 마무리하고 검찰 고발 등 수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기로 해 <숨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품수수 직원들은 중앙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은 “금품수수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일벌백계를 통해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7>